

#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



#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

【제정 2018. 1. 15.】  
【일부개정 2018. 2. 14.】  
【일부개정 2018. 7. 19.】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단규의 체계와 그 제정·개폐,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규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단규의 제정, 개폐,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단규”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업무·운영 등에 준거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인 규범 형식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.
2. “규정”이란 공단의 기본조직과 경영활동의 질서, 직원의 권리의무, 제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을 체계화하여 공단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.
3. “내규”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단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.
4. “예규”란 내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 내규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.

제4조(체계) 단규는 정관, 규정, 내규 및 예규로 나눈다.<개정 2018. 2. 14.>

제5조(단규의 명칭) 단규의 명칭은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다른 명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

항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예규는 그렇지 않다.

**제6조(제정형식)** ① 단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목차
2. 목적
3. 적용범위
4. 정의
5. 각 조문의 명칭
6. 시행일자

② 단규를 제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단규의 항목구분은 장, 절, 조, 항, 호, 목의 순서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, 절을 두지 않을 수 있다.
2.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.
3.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에 있어서 조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 다음에 “제10조의2” 등으로 추가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를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를 남기고 괄호 없이 “삭제”라고 표시한다.
4.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.
5. 외래어를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,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.

## 제2장 제정 및 개폐

**제7조(입안)** ① 단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당해 안건의 주무팀(이하 “입안팀”라 한다)이 입안하여 단규 담당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한다. 다만, 다른 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단규 담당팀은 단규 중 개정 또는 보완사항과 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안팀에 그 입안을 요청하거나 협의 후 직접 단규안을 입안할 수

있다.

**제8조(심의)** ①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단규안은 단규 담당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② 단규 담당팀은 입안팀에서 제출된 단규안을 관련 법규, 단규의 체계 및 관련 규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수정하거나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.

**제9조(절차)** ① 규정의 제정 및 폐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는 공단 정관 제24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되 공단 정관 부칙 제4조제2항에 정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.

2. 내규 및 예규는 이사장의 결재로 제정, 개폐한다.

② 단규 담당팀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, 내규 및 예규를 규정대장(별지 제2호 서식) 및 내(예)규대장(별지 제3호 서식)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효력)** ① 법령, 조례,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단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
② 단규는 정관, 규정, 내규, 예규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, 동일 순위의 단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단규가 일반단규에 우선하며, 동일 특별단규나 일반단규 간에는 신 단규가 구 단규에 우선한다.

**제11조(효력발생시기)** 단규는 그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**제12조(공포방법)** 정관, 규정 및 내규는 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정보통신망(공단 또는 시 홈페이지) 게재로 공포한다. 다만, 예규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로 갈음한다.

**제13조(공포일)** 정관, 규정 및 내규의 공포일은 그 정관, 규정 및 내규를 게재한 시 공보가 발행된 날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로 한다.

### 제3장 관리

제14조(시행) ① 제정 또는 개폐된 단규는 이사장의 명의로 공포 시행한다.

② 시행하는 규정 및 내규, 예규는 각각 일련(누년)번호를 쓰며 규정 대장 및 내규, 예규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5조(운용관리) ① 규정 및 내규, 예규의 원본은 단규 담당팀이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단규를 편집 발간한다.

② 단규집은 제4조에 따라 분류된 체계대로 편철하고 추록을 배포 가제하여 관리한다.

제16조(규정의 해석) 단규의 집행상·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경영기획팀장에 그 해석을 의뢰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주재 하에 관계부서장이 협의하여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. <개정 2018. 7. 19>

제17조(단규내용의 주지) ① 각 팀장은 소속직원에게 단규 시행문을 반드시 공람토록 하고 단규의 제정 또는 개폐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.

② 직원은 단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(2018. 2. 14.)

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7. 19.)

이 정관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단규안 작성요령(제7조제1항 관련)

### 1. 제정의 경우

[예시]

- 규정·내규안
- 규정·내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- 규정·내규
- 〈단규 내용 기재〉

### 2. 전부 개정의 경우

[예시]

- 규정·내규 전부 개정규정·내규안
- 규정·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규정·내규
- 〈단규 내용 기재〉

### 3. 일부 개정의 경우

[예시]

- 규정·내규 일부 개정규정·내규안
- 규정·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〈해당 개정 내용 기재〉

### 4. 개정내용 작성 요령

#### 가. 단규명의 개정 요령

- 1) 단규명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 
[예] 단규명 중 “---”을 “---”으로 한다.
- 2) 단규명 중 전부 개정하고자 할 경우  
[예] 단규명 “---”을 “---”으로 한다.

#### 나. 조, 항, 호를 일부 개정하는 요령

1) 주의사항

가) 개정, 삭제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장소를 명확히 지정

나) 인용부호(“ ”)로 개정될 자구를 인용할 때에는 간략한 표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앞뒤 자구를 아울러 인용

다) 하나의 조, 항, 호 중 여러 곳을 개정, 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개정 규정이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, 항, 호의 전문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한다.

2) 기존의 조, 항, 호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할 경우

[예] 제○조(제○항제○호) 중 “----”을 “----”로 한다.

3) 기존의 조, 항, 호 중의 일부를 연결하여 개정할 경우

[예] 제○조(제○항제○호) 중 “----”을 “----”로 하고, “----”을 “----”로 하며, “----”을 “----”로 한다.

※ 제○조의 제A항과 제B항에 개정할 부분이 있어 이를 연결하여 개정할 때

[예] 제○조 제A항 중 “----”을 “----”로 하고, 같은 조 제B항 중 “----”을 “----”로 한다.

4) 제명을 개정할 경우

[예] 제명 “----”을 “----”로 한다.

5)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경우

[예] 제○조의 제목 “(----)”을 “(----)”로 한다.

6) 기존의 조, 항, 호의 자구에 약간의 자구를 추가할 경우

가) 중간에 추가하는 경우

[예] 제○조(제○항제○호) 중 “----” 다음에(또는 앞에) “----”을 삽입한다.

나)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

[예] 제○조(제○항제○호) 중 “----” 다음에 “----”을 추가한다.

다. 조, 항, 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추가하는 요령

[예1] 제○조(제○항제○호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(그러나), ----

[예2] 제○조(제○항제○호)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-----

**라. 조, 항, 호를 전부 개정하는 요령**

1) 조의 경우

제○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○조 -----

2) 항의 경우

제○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-----

3) 호의 경우

제○조제○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-----

※ 전부 개정되는 항, 호의 수가 많을 때

[예1] 제○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[예2] 제○조(제○항)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**마. 조, 항, 호를 추가하는 요령**

1) 말미에 추가할 경우

가) 조의 경우

제○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○조 -----

나) 항의 경우

제○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-----

다) 호의 경우

제○조(제○항)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-----

2) 기존의 조, 항, 호 사이에 추가할 경우의 일반적 유의사항

가)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, 항, 호들을 순차적으로 뒤로 끌어 내려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자리에 삽입하여 추가

나) 이동되는 조, 항, 호 중 제일 끝의 조문부터 이동

다) 끌어올리거나 내릴 조문의 수가 많아 번잡할 경우에는 가지조, 호(제○조의2,의2)를 사용

3) 기존의 조를 끌어내리고 조를 추가하는 경우

〈본칙 10조로 이루어진 규정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함〉

가) 제10조를 제12조로, 제9조를 제11조로, 제8조를 제9조로 하고, 제8조와 제10조를 추가할 경우

[예1] 제10조를 제12조로, 제9조를 제11조로, 제8조를 제9조로 하고,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 -----

제10조 -----

[예2]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 -----

제8조를 제9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 -----

나)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0조와 제11조를 추가하는 경우

[예]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 -----

제11조 -----

4) 기존의 항(호)을 끌어내리고 2개항(호)을 추가하는 경우

〈3개항(호)으로 이루어진 조를 예로 함〉

[예] 제○조제3항(호)을 제5항(9호)으로 하고, 같은 조(항)에 제3항(호) 및 제4항(호)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----- (호의 경우 : 3. ---)

④----- (호의 경우 : 4. ---)

5)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

가) 제○조 다음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

[예] 제○조의2 및 제○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○조의2 -----

제○조의3 -----

나) 제1조(호) 앞에 조(호)를 추가하는 경우

[예] 제1조(호)를 제1조(호)의2로 하고, 제1조(호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 ----- (호의 경우 : 1. -----)

바. 조, 항, 호 또는 단서 등을 폐지하는 요령

[예1] 제○조(제○항, 제○호)를 삭제한다.

[예2] 제○조 단서(후단)를 삭제한다.

사. 조, 항, 호의 복합적 개정 요령

1) 어느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

<제2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것을 예로 함>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-----

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 -----

제2조의3 -----

2) 조문 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 전의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경우

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6조(중전의 제5조)중 "A"를 "B"로 한다.

3)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2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

[예] 제○조제1항 중 “----”을 “---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----”을 “--”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○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-----

4) 3개항으로 이루어진 2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1항 및 제2항의 항 번호는 그대로 두되,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, 제3항은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

[예] 제○조제1항 중 “----”을 “---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----”을 “----”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

이 신설한다.

다만, -----

제○조제3항 중 “----”을 “----”로 하고,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-----

5)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에 있어서 제2항을 전부 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, 새로이 제2항 및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

[예] 제○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현행 제2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-----

③-----

④-----

6) 제○조가 5개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제3호를 전부 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 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

[예] 제○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-----

제○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-----

7) 어느 조, 항의 각호를 전부 개정하면서 각호의 순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

<5개호를 3개호를 하는 경우를 예로 함>

[예] 제○조(제○항)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-----

2. -----

3. -----

8) 조, 항 중 어느 항(호)을 삭제하고, 다른 항(호)을 이동하는 경우

[예] 제○조제3항(호)을 삭제하고 제4항(호)을 제3항(호)으로 한다.

9) 어느 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5항을 한 항씩 끌어올리는 경우

[예] 제○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, 제4항을 제3항으로,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아. 장, 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 요령

1) 장, 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요령

가) 장, 절 등의 제목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 
제○장(절)의 제목을 “---”로 한다.

나) 장(절) 제목의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 
제○장(절)의 제목 중 “---”을 “---”로 한다.

2) 장, 절 등을 추가하는 요령

제○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○장 ○○○

제○조 -----

.

.

.

제○조 -----

3) 장, 절 등을 전부 개정하는 요령

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장 ○○○

제50조 -----

.

.

.

제58조 -----

자. 표의 개정 요령

1) 별표의 일부 개정 요령

〈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별표를 예로 함〉

[별표 1]

제 목	기 호	내 용
종합체육시설관리	100	0000 사용허가 관리사항

가) 종합체육시설관리의 전부 개정할 경우  
 별표 1 중 종합체육시설관리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종합체육시설관리	-----	-----
----------	-------	-------

나) 종합체육시설관리란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  
 별표 1의 종합체육시설관리란 중 “---”을 “---”로 한다.

다) [별표 1] 을 전부 개정할 경우  
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) 종합체육시설관리란을 삭제할 경우  
 별표 1 중 종합체육시설관리란을 삭제한다.

2) 별표를 전부 개정하여 2개의 별표로 하는 경우의 개정 요령  
 [별표] 를 [별표 1] 로 하여 다음과(별지와) 같이 한다.

[별표 1] ○ ○ ○

[별표 2] 를 다음과(별지와)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 2] ○ ○ ○

3) 2개의 별표를 개정하여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는 경우의 개정 방식

[별표 2] 를 삭제하고, [별표 1] 을 [별표] 로 하여 다음과(별지와) 같이 한다.

[별표] ○ ○ ○

#### 차. 폐지의 경우

1) 부칙에서 폐지하는 요령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○○○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2) 폐지를 위한 규정·내규를 제정하는 요령

○○○ 규정·내규폐지규정·내규안

○○○ 규정·내규는 이를 폐지한다.

카. 부칙

부 칙

이 규정·내규는 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시행한다.

타. 신구조문 대비표의 경우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○조(○○○) ① ---- ② ----	제○조(○○○) ① ----	
〈신 설〉 제○조(○○○) ----	제○조(○○○) ---- 〈삭 제〉	

- [주] 1. 제정 및 전부 개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함.  
2. 개정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 대비를 명백히 하여야 함.  
3. 비교란에는 개정 이유,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함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단규 제정(개정) 계획

제안일자 :

제안자 :

### 1. 제정(개정) 이유

(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기재한다)

### 2. 주요 내용

(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)

가.

나.

### 3. 참고 사항

가. 제안 근거

나. 예산 조치

다. 합 의

라. 그 밖의 참고사항



